

제 호

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2. 대표자:
3. 소재지(주소):

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시·도지사 직인
시장·군수·구청장